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에 복무 중인 병(兵)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도 과세 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,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21. ~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93조의10제2항”을 “영 제93조의10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복무 중인 병(兵)이 받는 급여: 「병역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또는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) <u>영</u> <u>제93조의10제2항</u> 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	제43조(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) <u>영</u> <u>제93조의10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<u>복무 중인 병(兵)이 받는 급여: 「병역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또는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/u>